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호스피스·연명의료 대국민 시민강좌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목 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삶의 마지막 순간

02. 연명의료결정제도

03. 호스피스완화의료

0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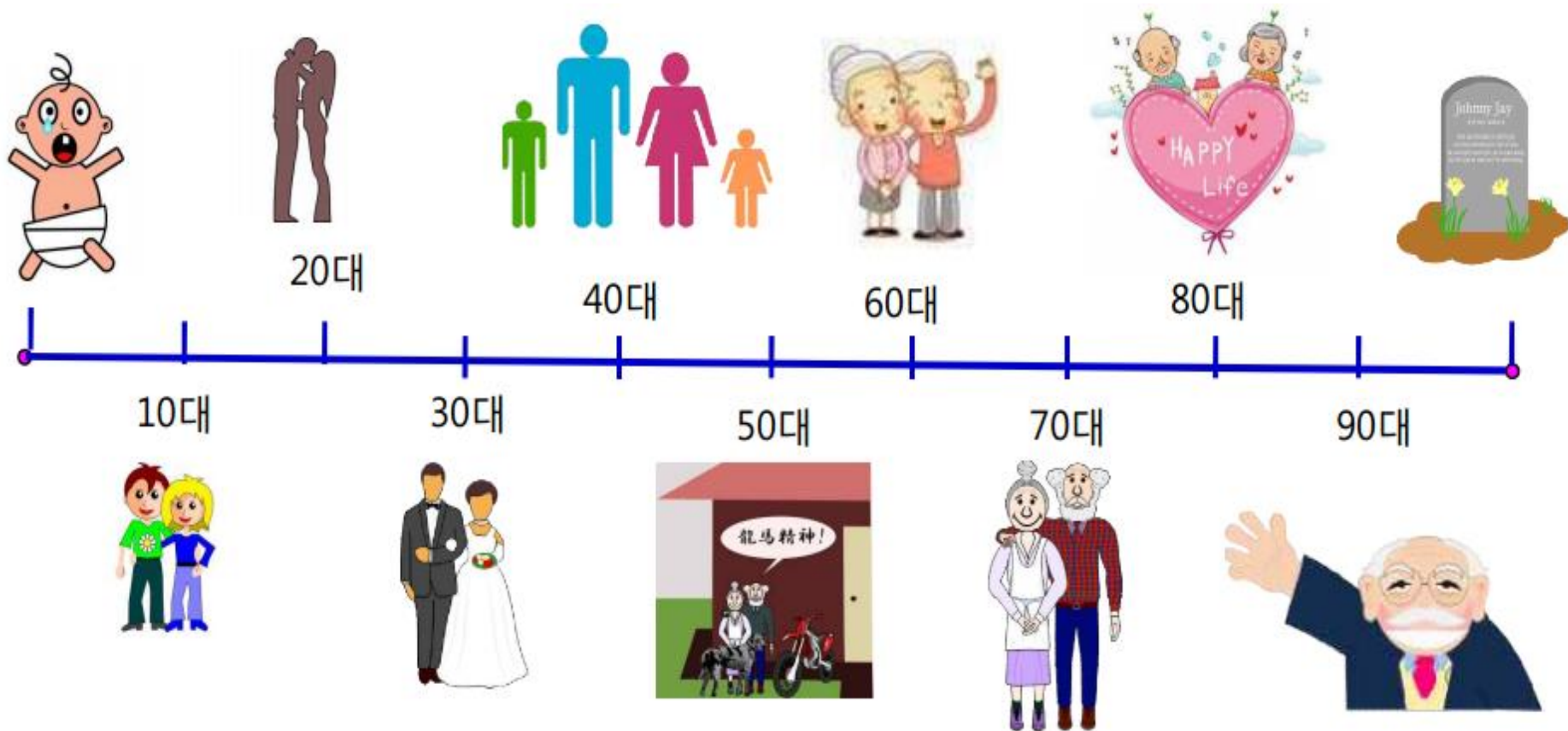


0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삶의 마지막 순간

삶의 과정



내 인생이 30일의 시간만 남아있다면? 영화 '버킷리스트'



'뭔가 장엄한 것을 보는것'말야
어때 멋지지 않나?



당겨, 줄을 당기라고!



인생의 기쁨을 찾아가게나, 에드워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삶의 마지막



■ 치료 당하다 고독사 ... 죽음 알아야 존엄 지킨다



연명의료=효 관념부터 깨트려야
돈 쫓는 과잉의료 탓 **힘겹게 숨져**

사망인구 4명 중 3명(74.9%, 2016년)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향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숙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로한 어머니를 고향집에 버려둔다면
자식들이 욕먹는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할머니는 병원의 좁은 침상에서 돌아가셨다.

2018.02.04. 중앙선데이 양선희 기자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0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연명의료결정제도



'18년 2월 4일 ,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함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4항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할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 도움
- 대부분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





혈액투석

-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항암제 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기술





체외생명유지술

-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 장치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





혈압상승제(승압제) 투여

-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



그 외 담당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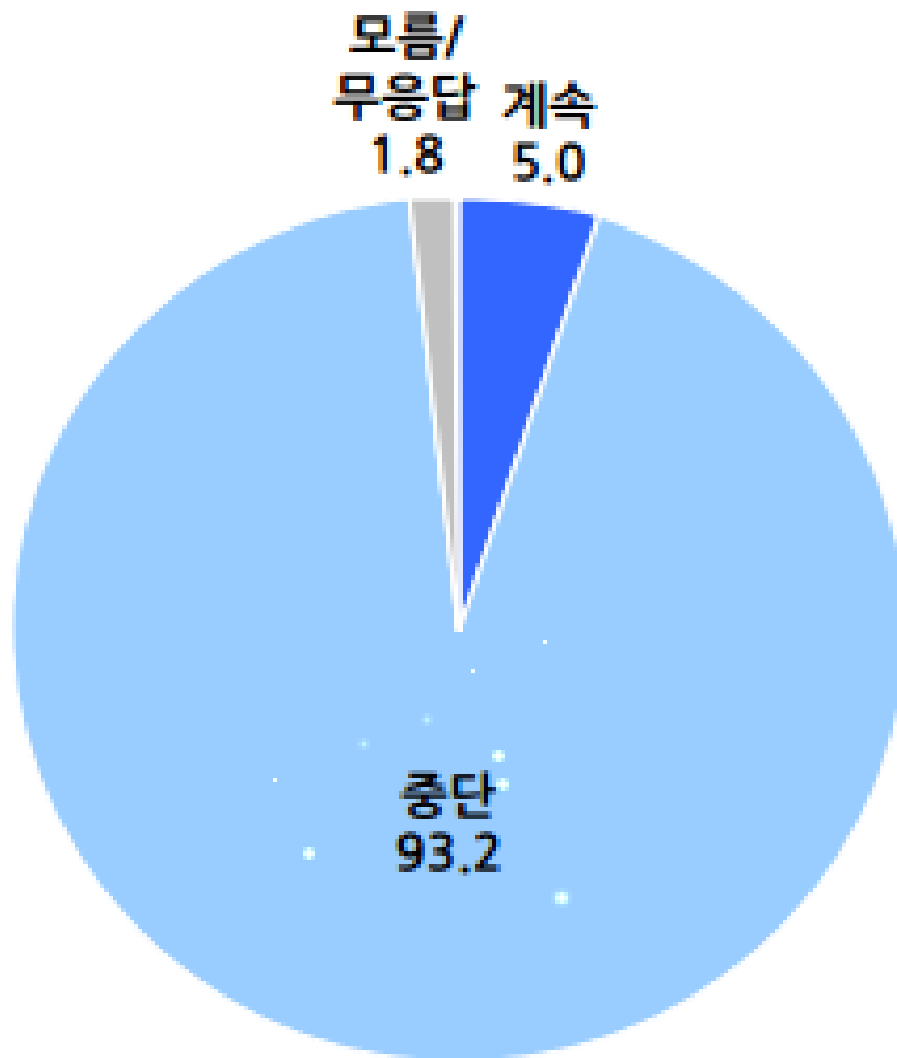


-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중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중단되어서는 안됨 !!**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 영양분 공급
- 물 공급
- 산소의 단순 공급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찬반 물어보니 (단위 %)



N:1,016
생명윤리정책연구원(2017.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에게 의사 표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정의

- ◆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하여
- ◆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



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필요성

- ◆ 미리 임종을 고민하고,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 해 볼 기회
- ◆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
- ◆ 언제라도 **작성, 변경, 철회** 가능

※ 직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확인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	제	기	작성일
---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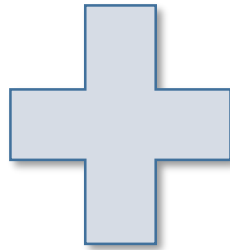
이름	성명	성명	성명
----	----	----	----

등록자 (서명 또는 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등록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사 및 출장소)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떻게 등록 할 수 있나요?



①

h·well
국민건강보험



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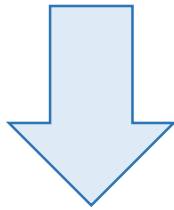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 및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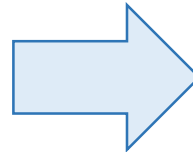




① 환자 상태 판단



② 환자 의사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0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팀이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 상담
- 환자와 가족교육(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
-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 **음악, 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 입원형

- 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

■ 가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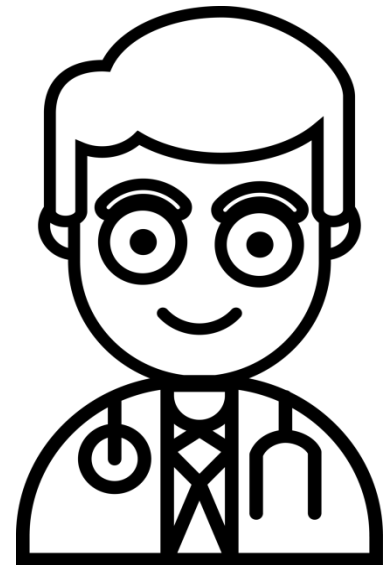
- 말기암,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에이즈
-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
- 호스피스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의사 방문

■ 자문형

- 말기암, 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에이즈
- 일반병동에서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들에게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 제공



- 말기진단(담당의사)
- 호스피스 진료의뢰/방문
- 호스피스팀과 상담, 말기진단(호스피스 담당 전문의)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작성
- 호스피스 이용





**“다가오는 죽음에 겸손하게
순응하였습니다.**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2009.3.19 천주교 주교회의발표문)





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참고자료**



■ 보라매 사건(1997년)

-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 -> 해당의료진들에게 살인방조죄 적용 ->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됨

■ 김 할머니 사건(2009년)

- 폐암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도 식물인간이 됨, 자녀들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 요구(영양제공 중단은 요구하지 않음) ->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09.5.21.) -> 연명의료중단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필요성 인식하나, 소극적 태도 유지

※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떼 뒤에도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아 생존, 2010.1.10.사망

■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내용 제시, 특별법 제정 권고

■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 제안

■ (2016년 2월) 임종 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 제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연명의료중단 등 환자본인의 의향 또는 의사확인 제도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통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환자의 의사	본인의 명시적 의사 환자 의사의 추정	본인의 명시적 의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하는 방법

구분	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담당의사가 확인
2.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의사가 작성
3.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지만, 환자가족* 2인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 의사 2인의 확인으로 가능 *환자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 형제자매 (①~③없는 경우)
4.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확인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고, 평소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2인의 확인으로 가능 ※ 환자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③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2020.9월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구분	단위 (명, %)
총 등록자수	708,808
남자	211,009(29.8%)
여자	497,799(70.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연령 내 성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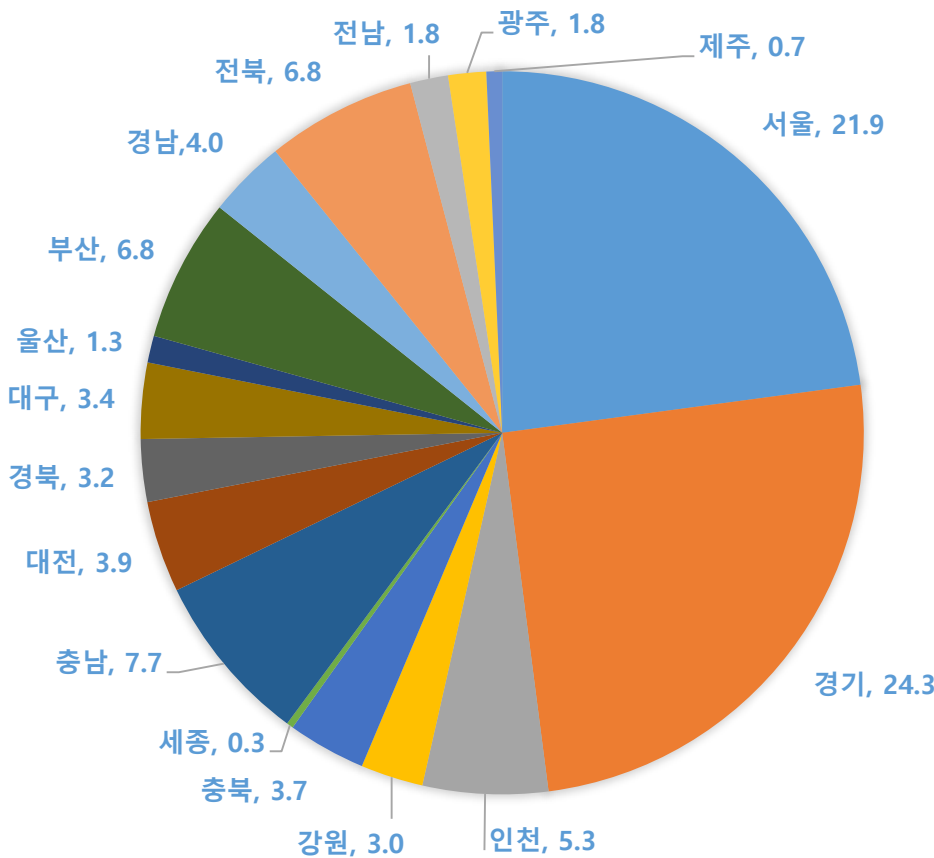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등록자수	전체	708,808	1,828	3,948	18,862	59,326	163,619	322,722	138,503
	남	211,009	661	1,276	5,652	18,032	45,939	95,004	44,445
	여	497,799	1,167	2,672	13,210	41,294	117,680	227,718	94,05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 (2020.9월말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지역별 분포 현황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